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127호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창원시 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경우 이에 대한 위탁·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 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나.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7조)

다.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10조)

마.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바. 수탁·대행기관의 정산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제15조)

사.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17조)

아. 위탁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6,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mhwa@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최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6
----------	-----

발의연월일: 2023. 11. 17.

발 의 의 원: 최정훈 · 김남수 · 김미나 · 김상현 · 김영록
남재욱 · 박승엽 · 정보빈 · 안상우 · 이종화
이천수 · 홍용채 의원(12명)

찬 성 의 원: 권성현 · 김경수 · 김묘정 · 김헌일 · 박강우
손태화 · 심영석 · 이우완 · 진형익
한상석 의원(10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경우 이에 대한 위탁·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 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나.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7조)

다.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10조)

마.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바. 수탁·대행기관의 정산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제15조)

사.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17조)

아. 위탁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대행하게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탁·대행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

는 경우(위탁·대행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다시 위탁·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공공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 행정의 보장성
8. 제16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및 제17조에 따른 감사 결과(위탁·대행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다시 위탁·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위탁·대행 사무의 소관부서에 창원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

성한다.

1.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해당 위탁·대행 사무 관련 공무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기술사,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해당 위탁·대행 사무 분야에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대행 사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기관 등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위탁·대행하는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경우
2.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 공공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법령과 조례에 수탁·대행기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5.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경우
6. 연간 위탁·대행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7. 일회성 또는 단순 반복성 사무로서 위탁·대행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8. 재난·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위탁·대행 사무명
2. 위탁·대행 사무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대행 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 시설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대행 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위탁·대행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위탁·대행 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경우
2. 위탁·대행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대행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9조(수탁·대행기관 선정)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4. 사업 운영의 투명성 등

제10조(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대행기관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대행기관의 명칭·소재지
2. 위탁·대행의 목적
3. 위탁·대행 사무명 및 그 내용
4. 위탁·대행 기간
5.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당사자들의 책임과 권한
9. 계약의 변경·해제·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점검·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대행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대행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대행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위탁·대행 사무명
2. 수탁·대행기관의 명칭
3. 위탁·대행 기간 및 비용

제11조(위탁·대행 사무처리지침) 시장은 수탁·대행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무별로 주요 문제점 및 보완대책을 포함한 사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의 부담 등) ① 시장은 수탁·대행기관이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 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위탁·대행에 따른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② 수탁·대행기관은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대행기관이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집행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실적보고)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을 완료한 경우 완료일 부터 6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수탁·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위탁·대행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정산 및 평가) ① 수탁·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창원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해야 하고,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해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대행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대행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대행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관련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수탁·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감사) ① 시장은 위탁·대행 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 사무 처리 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대행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탁 계약(이하 이 조에서 “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위탁 사무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사무를 처리한 경우
5. 그 밖에 창원시가 공익상의 이유로 계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창원시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대행 사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

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